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221호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확 정 일 : 2022년 1월 28일

시 행 일 : 2022년 3월 2일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제안사유

- 연구원 특정감사('21.04) 결과 조치의 일환으로 위임 규정 개정, 연구과제 변경절차 개정, 제안서 작성기준 개정, 연구노트 관리, 학술연구용역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기준 신설
- 직제개편사항 반영, 타부서로 이관된 인증업무 관련 조항 삭제

2. 주요골자

- 가. 연구원 조직개편사항 반영(안 제4조, 제6조,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4조제2항)
- 나. 용어수정(제7조)
- 다. 불필요한 위임 규정 삭제(안 제9조, 제10조)
- 라.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규정 마련 및 양식 반영(안 제14조제2항 및 별지 서식)
- 마. 학술연구용역 성과물 제출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 바. 연구과제 변경 절차 개정 및 기존 조항 삭제(제25제2항, 제23조)
- 아. 연구노트 등 연구자료 관리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
- 자. 타부서로 이관된 인증업무 관련 조항 삭제
(제41조~제47조, 제55조~제61조, 제61조의2~제61조의8)

붙임 :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제4조 중 “연구기획부서의 장으로”를 “선임연구위원 중 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구기획부서의 장”을 “선임연구위원 중 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완료로”를 “최종으로”로 한다.

제9조 중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를 “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연구지원부서의 장 또는 연구기획부서의 장”을 “연구기획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과제 제안서는 별지서식과 같이 연구과제명,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연구지원부서의 장 또는 연구기획부서의 장”을 “연구기획부서

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연구지원부서의 장”을 “연구기획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현업부서 학술연구용역 발주)”를 “(현업부서 학술연구용역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주해야 한다.”를 “기획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주해야 하며, 연구성과물은 연구기획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공개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연구성과물은 연구기획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 제목 “(연구진 구성 및 변경)”을 “(연구진 구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 제목 “(연구과제 착수)”를 “(연구과제 착수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착수한 연구과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연구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연구자료 관리

제34조제2항 중 “연구지원부서의 장”을 “연구기획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장제1절을 삭제한다.

제41조부터 제47조를 삭제한다.

제7장 제3절을 삭제한다.

제55조부터 제61조를 삭제한다.

제7장 제4절을 삭제한다.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8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2022.1.28>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연구과제 제안서

1.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명으로 기입]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제외하신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한 대내외적 여건 기술]
3. 연구내용 및 연구수행방법	• [연구과제에 담겨져야 할 내용을 간결하게 기술]
4.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과제 종료 후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예상되는 기대효과 기술]
6. 연구결과 도출 희망시기	• 20**. **. [제안한 연구과제의 결과를 받고 싶어 하는 희망시기]
5. 특기사항	• [상기의 내용 외 기타 연구과제 선정심사 시 참고 사항 기술]
20**. **. 00 제안부서 : □□□□본부 ○○○○○처 제 안 자 : 홍길동 (직위)	

※ 연구제안서 페이지 제한은 없으니, 각 항목에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과제의 경우 RFP로 대체 가능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4조(연구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업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연구기획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연구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연구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업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u>선임연구위원 중 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u> 로 하며, 위원은 각 연구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장 선정기준 변경
제6조(연구심의위원회 구성)① (생략) ② 심의위원장은 연구기획부서의 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내외전문가로 한다.	제6조(연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좌동) ② 심의위원장은 <u>선임연구위원 중 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u> 또는 그에 준하는 사내외전문가로 한다.	직제개편에 따라 심의위원장 선정 기준 변경
제7조(연심위 운영) ① 연심위는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따라 착수, 중간, 완료로 구분하여 개최 및 운영한다.	제7조(연심위 운영) ① 연심위는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따라 착수, 중간, <u>최종으로</u> 구분하여 개최 및 운영한다.	심의성격에 맞도 록 용어수정
제9조(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절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은 해당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3차 연도 종료 전(차기 중장기연구개발계획 개시 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얻어 <u>수립함을 원칙으로</u>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절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은 해당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3차 연도 종료 전(차기 중장기연구개발계획 개시 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얻어 <u>수립한다.</u>	불필요한 위임 규정 삭제
제10조(연도별 연구개발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① (생략) ②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은 매년 정기연구과제 제안요청 이전까지 <u>수립함을 원칙으로</u>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연도별 연구개발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① (좌동) ②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은 매년 정기연구과제 제안요청 이전까지 <u>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u>	불필요한 위임 규정 삭제

현행	개정(안)	사유
제14조(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①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업부서장 및 연구수행부서의 장, 외부기관장 등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u>연구지원부서의 장 또는 연구기획부서의 장</u>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①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업부서장 및 연구수행부서의 장, 외부기관장 등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u>연구기획부서의 장</u> 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제개편사항 반영 현업부서 등에서 의 과제제안에 필 요한 제안서 작성 에 필요한 기본적 인 사항 명시 (별지서식 제공)
② 연구과제 제안서의 작성내용,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u>연구과제 제안서는 별지서식과 같이 연구과제명,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	
제17조(연구과제 선정결과 통보) <u>연구지원부서의 장 또는 연구기획부서의 장</u> 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 선정결과를 연구과제를 제안한 현업부서장 및 연구수행부서의 장, 해당 외부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연구과제 선정결과 통보) <u>연구기획부서의 장</u> 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 선정결과를 연구과제를 제안한 현업부서장 및 연구수행부서의 장, 해당 외부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직제개편사항 반영
제19조(위탁연구 수행) ①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에 발주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시행계획서에 따른 연구일정에 따라 발주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u>연구지원부서의 장</u> 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연구 수행) ①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에 발주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시행계획서에 따른 연구일정에 따라 발주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u>연구기획부서의 장</u> 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직제개편사항 반영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현업부서의 학술연구용역 발주)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업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u>연구지원부서의 장과의 협의</u> 를 거쳐 발주해야 한다.	제21조(현업부서의 학술연구용역 <u>협</u> 의)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업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u>연구기획부서의 장과의 협의</u> 를 거쳐 발주해야 하며, <u>연구성과물은 연구기획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공개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연구성과물은 연구기획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u>	업무내용에 맞게 용어수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학술연구용역 성 과관리 규정 및 예외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사유
제23조(연구진 구성 및 변경) ①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의 담당역할, 참여비중, 기존 연구과제 수행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 ② 연구진을 변경할 때에 연구책임자는 변경된 연구진, 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시행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연구진 구성) ①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의 담당역할, 참여비중, 기존 연구과제 수행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 〈삭 제〉	변경 관련 규정 통합(제2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제25조(연구과제 착수) ① 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책임자가 연구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기간 등 연구시행계획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연구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해야 한다.	제25조(연구과제 착수 및 변경) ① 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책임자가 연구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착수한 연구과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연구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관련 규정 통합
제31조(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규정 제18조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연구개발계획 등 각종 연구자료	제31조(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규정 제18조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연구자료 관리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정*에 따라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자구 표현 수정
제34조(연구결과 활용) ① (생략) ② 연구지원부서의 장은 연구결과가 우수한 자를 포상대상자로 인사부서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4조(연구결과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연구결과가 우수한 자를 포상대상자로 인사부서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직제개편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절 녹색건축 인증	<삭 제>	연구개발업무규정 관련조항 삭제 및 「녹색건축 인증 업무지침」 제정에 따라 삭제
제41조 (생 략)	<삭 제>	
제42조 (생 략)	<삭 제>	
제43조 (생 략)	<삭 제>	
제44조 (생 략)	<삭 제>	
제45조 (생 략)	<삭 제>	
제46조 (생 략)	<삭 제>	
제47조 (생 략)	<삭 제>	
제3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삭 제>	연구개발업무규정 관련조항 삭제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제도 업 무지침」 제 정 에 따라 삭제
제55조 (생 략)	<삭 제>	
제56조 (생 략)	<삭 제>	
제57조 (생 략)	<삭 제>	
제58조 (생 략)	<삭 제>	
제59조 (생 략)	<삭 제>	
제60조 (생 략)	<삭 제>	
제61조 (생 략)	<삭 제>	
제4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삭 제>	연구개발업무규정 관련조항 삭제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 무처리 지침」 제 정에 따라 삭제
제61조의2 (생 략)	<삭 제>	
제61조의3 (생 략)	<삭 제>	
제61조의4 (생 략)	<삭 제>	
제61조의5 (생 략)	<삭 제>	
제61조의6 (생 략)	<삭 제>	
제61조의7 (생 략)	<삭 제>	
제61조의8 (생 략)	<삭 제>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9.10. 1 시행세칙 제21호
개정 2009.12.29 시행세칙 제28호
개정 2010.10. 1 시행세칙 제41호
개정 2011. 4.28 시행세칙 제51호
개정 2011.10.25 시행세칙 제60호
개정 2014. 6. 9 시행세칙 제102호
개정 2017.12.27 시행세칙 제158호
개정 2022.1.28 [시행세칙 제2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구개발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업무 관련 위원회

제1절 삭제

제2조(삭제) <2014.06.09>

제3조(삭제) <2014.06.09>

제2절 연구업무조정위원회

제4조(연구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업무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선임연구위원 중 연구원장이 지](#)

정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각 연구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8>

제5조(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위원회의 소집 및 진행, 심의사항, 결과보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연구심의위원회

제6조(연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연심위”라 한다)는 연구과제별로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선임연구위원 중 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내외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2.1.28>

③ 심의위원은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을 갖춘 사내외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 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심위 운영) ① 연심위는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따라 착수, 중간, 최종으로 구분하여 개최 및 운영한다. <개정 2022.1.28>

② 연심위 개최계획 수립, 대상 연구과제, 결과보고 등 연심위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계획 수립

제1절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제8조(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기준) 규정 제7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과 기본방향
2. 연구 분야별 추진계획
3. 연구 분야별 추진전략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일정(로드맵) 등

제9조(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절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은 해당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3차 연도 종료 전(차기 중장기연구개발계획 개시 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개정 2022.1.28>

제2절 연도별 연구개발계획 수립

제10조(연도별 연구개발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① 규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연구목표
2. 연도별 연구 기본방향
3. 주요 연구사업 계획
4. 연구사업 별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5. 추정예산 및 연구인력에 관한 사항 등

②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은 매년 정기연구과제 제안요청 이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개정 2022.1.28>

제11조(삭제) <2014.06.09>

제4장 연구과제 제안 및 선정

제1절 연구과제 제안

제12조(정기연구과제 제안요청)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정기연구과제를 제안받기 위해서는 규정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현업부서장, 연구수행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정기연구과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기관의 장에 대하여도 제안요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시연구과제 제안)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정부정책 요구, 공사 경영목표 달성 및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시급히 연구수행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시로 제안받을 수 있다.

제14조(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①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업부서장 및 연구수행부서의 장, 외부기관장 등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연구과제 제안서는 별지서식과 같이 연구과제명,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2절 연구과제 선정

제15조(연구과제 제안서 사전검토) ① 제14조에 따라 제안된 연구과제 제안서에 대하여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사전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수행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과제 선정시기) ①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정기

연구과제는 해당 연도 말까지 선정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다음 연도 경영목표 및 업무계획 등과 연계가 필요한 때에는 정기연구과제의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시연구과제의 선정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연구과제 선정결과 통보)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 선정결과를 연구과제를 제안한 현업부서 장 및 연구수행부서의 장, 해당 외부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5장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

제1절 연구과제 수행 방법

제18조(공동연구 수행) ①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연구기관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연구는 외부기관과의 협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행 보고, 연구보고서 발간 등 연구수행 절차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연구 수행) ①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에 발주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시행계획서에 따른 연구일정에 따라 발주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연구기획부서의 장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의 착수, 진행, 연구결과 및 준공서류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이외에 별도의 관리·검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연구 수행) ①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연구를 수행할 때

에는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및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연구는 외부기관과의 협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행보고, 연구보고서 발간 등 연구수행 절차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현업부서의 학술연구용역 협의)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업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기획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주해야 하며, 연구성과물은 연구기획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공개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연구성과물은 연구기획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8>

[제목개정 2022.1.28]

② 삭제 <2014.06.09>

제2절 연구책임자 지정 및 연구진 구성

제22조(연구책임자 임무 및 변경) ①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시행계획서 작성, 연구진행 보고 등 연구수행절차에 따라 충실히 연구수행을 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 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시행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연구진 구성) ①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의 담당역할, 참여비중, 기존 연구과제 수행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

② 삭제 <2022.1.28>

[제목개정 2022.1.28]

제3절 연구과제의 진행

제24조(연구시행계획서 작성)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행계획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연구계획서로서 연구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기간,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연구방법, 기대효과, 연구진 구성, 예산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25조(연구과제 착수 및 변경) ① 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책임자가 연구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착수한 연구과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연구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목개정 2022.1.28]

제26조(연구진행보고) 연구책임자는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연구진행상황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연구과제의 관리

제27조(연심위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규정 제5조에 따른 연심위 결과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연구과제 보안관리)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연구과제를 관리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안 업무 시행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삭제

제29조(삭제) <2014.06.09>

제30조(삭제) <2014.06.09>

제6절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31조(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규정 제18조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제안 및 선정 관리
2. 연구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3. 연구수행 관리
4. 연심위 심의결과 관리
5. 연구결과 평가 관리
6. 연구성과 관리
7. [연구자료 관리](#) <개정 2022.1.28>
8. 그 밖에 연구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은 연구원장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되, 각 연구과제별 관리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연구관리시스템은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여 메뉴체계, 입력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결과 평가

제1절 연구결과 평가

제33조(연구결과 평가시기 및 방법) 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연구결과 활용) ①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차기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선정, 종합근무평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연구결과가 우수한 자를 포상대상자로 인사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과 제2항의 연구결과 활용 및 포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원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절 삭제

제35조(삭제) <2014.06.09>

제3절 삭제

제36조(삭제) <2014.06.09>

제37조(삭제) <2014.06.09>

제38조(삭제) <2014.06.09>

제4절 삭제

제39조(삭제) <2014.06.09>

제5절 삭제

제40조(삭제) <2014.06.09>

제7장 정부대행 인증·평가업무 등

제1절 삭제 <2022.1.28>

제41조 삭제 <2022.1.28>

제42조 삭제 <2022.1.28>

제43조 삭제 <2022.1.28>

제44조 삭제 <2022.1.28>

제45조 삭제 <2022.1.28>

제46조 삭제 <2022.1.28>

제47조 삭제 <2022.1.28>

제2절 삭제

제48조(삭제) <2014.06.09>

제49조(삭제) <2014.06.09>

제50조(삭제) <2014.06.09>

제51조(삭제) <2014.06.09>

제52조(삭제) <2014.06.09>

제53조(삭제) <2014.06.09>

제54조(삭제) <2014.06.09>

제3절 삭제 <2022.1.28>

제55조 삭제 <2022.1.28>

제56조 삭제 <2022.1.28>

제57조 삭제 <2022.1.28>

제58조 삭제 <2022.1.28>

제59조 삭제 <2022.1.28>

제60조 삭제 <2022.1.28>

제61조 삭제 <2022.1.28>

제4절 삭제 <2022.1.28>

제61조의2 삭제 <2022.1.28>

제61조의3 삭제 <2022.1.28>

제61조의4 삭제 <2022.1.28>

제61조의5 삭제 <2022.1.28>

제61조의6 삭제 <2022.1.28>

제61조의7 삭제 <2022.1.28>

제61조의8 삭제 <2022.1.28>

제5절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및 성능

제61조의9(검토요청)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친환경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서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관련 서류를 친환경주택평가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10(검토기준) 친환경 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서의 세부 검토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1조의11(서류보완요청 또는 반려) 검토에 필요한 관련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친환경주택평가 운영부서장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류 보완을 거부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제61조의12(결과통보) 친환경주택평가 운영부서장은 친환경 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서의 적절성 검토가 완료되었을 때, 그 결과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삭제 <17.12.27>

제1절 삭제

제62조(삭제) <09.12.29>

제63조(삭제) <09.12.29>

제64조(삭제) <09.12.29>

제65조(삭제) <09.12.29>

제66조(삭제) <09.12.29>

제67조(삭제) <09.12.29>

제68조(삭제) <09.12.29>

제69조(삭제) <09.12.29>

제70조(삭제) <09.12.29>

제71조(삭제) <09.12.29>

제72조(삭제) <09.12.29>

제73조(삭제) <09.12.29>

제74조(삭제) <09.12.29>

제2절 삭제

제75조(삭제) <2010.10.01>

제75조의2(삭제) <2010.10.01>

제75조의3(삭제) <2010.10.01>

제76조(삭제) <09.12.29>

제77조(삭제) <2010.10.01>

제77조의2(삭제) <2010.10.01>

제78조(삭제) <09.12.29>

제79조(삭제) <2010.10.01>

제79조의2(삭제) <2010.10.01>

제79조의3(삭제) <2010.10.01>

제79조의4(삭제) <2010.10.01>

제79조의5(삭제) <2010.10.01>

제80조(삭제) <2010.10.01>

제81조(삭제) <09.12.29>

제82조(삭제) <09.12.29>

제83조(삭제) <2010.10.01>

제84조(삭제) <2010.10.01>

제85조(삭제) <2010.10.01>

제86조(삭제) <09.12.29>

제87조(삭제) <09.12.29>

제88조(삭제) <09.12.29>

제89조(삭제) <09.12.29>

제3절 삭제 <17.12.27>

제90조(삭제) <17.12.27>

제91조(삭제) <17.12.27>

제92조(삭제) <17.12.27>

제93조(삭제) <17.12.27>

제94조(삭제) <17.12.27>

제95조(삭제) <17.12.27>

제96조(삭제) <17.12.27>

제97조(삭제) <17.12.27>

제98조(삭제) <17.12.27>

제99조(삭제) <17.12.27>

제100조(삭제) <17.12.27>

제101조(삭제) <17.12.27>

제102조(삭제) <17.12.27>

제103조(삭제) <17.12.27>

제104조(삭제) <17.12.27>

제105조(삭제) <17.12.27>

제106조(삭제) <17.12.27>

제107조(삭제) <17.12.27>

제108조(삭제) <17.12.27>

제109조(삭제) <17.12.27>

제110조(삭제) <17.12.27>

제111조(삭제) <17.12.27>

제112조(삭제) <17.12.27>

제113조(삭제) <17.12.27>

제4절 삭제

제114조(삭제) <2014.06.09>

제115조(삭제) <2014.06.09>

제116조(삭제) <2014.06.09>

제117조(삭제) <2014.06.09>

제118조(삭제) <2014.06.09>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대한주택공사의 「연구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접수되어 검토중인 신자재의 평가절차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대한주택공사의 「연구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등록되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행세칙에 따라 인정받은 신기술로 본다.

부 칙<2010.10. 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 이전까지 신기술 신청 및 접수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인정된 신기술과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되어 심의, 인정된 신기술은 시행일부터 2년간 공사가 인정한 신기술로서의 효력을 유지한다.

부 칙<2011. 4. 28>

이 시행세칙은 201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09>

이 시행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7>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8>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연구과제 제안서

1.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명으로 기입]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제외하신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한 대내외적 여건 기술]
3. 연구내용 및 연구수행방법	• [연구과제에 담겨져야 할 내용을 간결하게 기술]
4.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과제 종료 후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예상되는 기대효과 기술]
6. 연구결과 도출 희망시기	• 20**. **. [제안한 연구과제의 결과를 받고 싶어 하는 희망시기]
5. 특기사항	• [상기의 내용 외 기타 연구과제 선정심사 시 참고 사항 기술]
20**. **. 00 제안부서 : □□□□본부 ○○○○○처 제 안 자 : 홍길동 (직위)	

※ 연구제안서 페이지 제한은 없으니, 각 항목에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과제의 경우 RFP로 대체 가능